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818
----------	-----

제출년월일 : 2011. 3. .

제출자 : 중구청장

1. 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대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 ~ 제5조)
- 나.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수립(안 제6조 ~ 제7조)
- 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운영 및 업무(안 제8조 ~ 제10조)
- 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안 제11조 ~ 제12조)
- 마.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안 제13조 ~ 제15조)
- 바.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규정

2013. 11. 23까지 유효기간 설정(안 부칙)

3. 근거법규

- 가. 「유통산업발전법」
-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4.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 다. 관련부처 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사항 : 2010. 12. 6 ~ 2010. 12. 26(의견 없음)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구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구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등)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협의회의 회장은 생활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 가. 관내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 나. 관내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 라. 상공회의소 관계자
 - 마.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 바.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사. 그 밖에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
-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 ⑤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구청장은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

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구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1조제1 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구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구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등록에 불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구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7호·제8호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818)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1. 3. 30(수)
-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 : 2011. 3. 30(수)
- 라. 위원회 심사 : 2011. 4. 8(금)

3.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대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 수립(안 제6조)
 -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
 - 대규모 점포와 중소규모 점포간의 상생발전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업무(안 제8조 ~ 제10조)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안 제11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가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규정 2013. 11. 23까지 유효기간 설정(안 부칙)

4. 근거법규

-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
- 「유통산업 발전법」 제5조

5. 검토의견 (전문위원 진부호)

- 본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대해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점포 및 준 대 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중구의 실정에 적합한 유통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 본 제정 조례가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 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구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 제6조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의 수립 등”을 “유통산업 상생 발전 추진 계획의 수립 등”으로, 조문 삽입이 필요하며,
 - 우리구에는 전통시장이 많이 있고 그 중요성을 감안,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서도
 - ▶ 제8조제3항 “협의회의 회장은 생활지원국장”을 “협의회 회장은 부구청장”으로,
 - ▶ 제8조제3항제2호에 “유통 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을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4급 공무원”으로,
 - ▶ 제8조제4항 “간사는 유통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주무관”을 “담당사무관”으로 조문을 수정하여 협의회 기능을 보강과
 - 제14조 제1항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를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로 조문을 추가 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사유

- 제정 조례안 중 일부 누락된 부분의 자구 삽입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성인원 증대 및 구성원 직급 조정

7. 수정내용

제정안	수정안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u>추진의 수립등</u>) ① ~ ③ (생략)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u>추진계획의 수립 등</u>) ① ~ ③ (생략)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 운영) ① (생략) ②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u>1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 운영) ① (생략) ②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u>1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p>③ 협의회의 회장은 <u>생활지원국장이</u>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p>1. (생략) 가. ~ 나. (생략) 다. <u>소비자 단체의 대표</u> 라. ~ 마. (생략)</p> <p><u>< 신 설 ></u></p> <p>바.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 그 밖에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2.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u>5급 공무원</u></p> <p>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 하는 <u>담당주무관으로</u> 한다.</p> <p>⑤ (생략)</p> <p>제14조(조건 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제13조 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u>개설등록을</u> 하는 때에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협의회의 회장은 <u>부구청장이</u>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p>1. (생략) 가. ~ 나. (생략) 다. <u>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대표</u> 라. ~ 마. (생략)</p> <p><u>바. 구 의원</u></p> <p><u>사.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u> 경험이 풍부한 자 <u>아. 그 밖에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u>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2.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u>4급 공무원</u></p> <p>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 하는 <u>5급 공무원으로</u> 한다.</p> <p>⑤ (생략)</p> <p>제14조(조건 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제13조 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u>개설등록 또는</u> <u>변경등록을</u> 하는 때에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 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p> <p>② (생략)</p>